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92호)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95호)
-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26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제2212392호),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제2212495호),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13026호) … 1

I. 제안경위 ……………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III. 검토의견 …………… 10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0

2. 제정안의 내용 …………… 18

3. 주요 항목별 검토 …………… 23

가. 제1장 총칙 …………… 23

나.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 31

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 58

라.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 65

마. 제5장 보칙 …………… 92

사. 제6장 벌칙 …………… 100

아. 제7장 부칙 …………… 107

I . 제 안 경 위

【황운하의원안】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6.
3. 회 부 일 : 2025. 8. 27.

【김은혜의원안】

1. 제 안 자 : 김은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8. 28.
3. 회 부 일 : 2025. 8. 29.

【복기왕·권영진의원안】

1. 제 안 자 : 복기왕·권영진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9. 16.
3.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황운하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가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과 관련 사업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와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3조 등).

자.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김은혜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지정받도록 하며,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등).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안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무단 방치,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행,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섰으며, 불법 방치,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은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권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가 시급한 반면, 지방의 교통취약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을 보완하는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기술혁신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제도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9조, 제30조).

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명의대여 및 불공정행위 금지하고 위탁·양도·상속·휴업 및 폐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대여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라. 주차·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보호장구 보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대여사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친환경 배터리, 자율주행·스마트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등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취소·개선명령·청문 등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Ⅲ.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시장 규모는 2020년 99,350대, 2021년 161,850대, 2022년 222,000대로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후 2023년 259,177대, 2024년 219,664대로 정체 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 현황>

(단위: 대)

구 분	연 도					
PM 운영대수 (공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970	99,350	161,850	222,000	259,177	219,664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PM 산업협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5개 주요 업체가 199,550대¹⁾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15,970대, 대구 12,502대, 경기 70,556대, 충북 11,026대, 전남 3,547대 등임(참고1 참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지역별 운영 현황 >

(단위: 대)

합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15,970	10,313	8,799	12,502	6,991	6,438	7,215	70,556	3,520
199,55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11,026	10,042	9,189	3,547	9,489	9,779	2,937	2,937	

자료 : 국토교통부(2025. 7. 기준), 한국PM 산업협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232건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8년 225건 대비 약 9.9배로 증가하였으며, 총 사상자수(사망자+부상자) 또한 2024년 2,509명으로 2018년 대비 약 10.3배로 증가하였음.

< 2018년 이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고건수	225	447	897	1,735	2,386	2,389	2,232
사상자수 (사망+부상)	242	481	995	1,920	2,710	2,646	2,509
사망자수	4	8	10	19	26	24	23
부상자수	238	473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국토교통부, 경찰청

1)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5개 업체의 현황으로 업체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에 대해 12시~23시까지 ‘킵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²⁾.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어린이놀이기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³⁾.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의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청의 경우 2024년까지 총 81개소의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 것에 비해 2025년에는 152개소를 추가 조성하였고⁴⁾, 세종시는 상업지역과 학원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구역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중점관리구역 내 실물 주차구역 67곳과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음⁵⁾.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2) 서울시, 「‘킵보드 없는 거리’ 운영해보니...시민 98%가 ‘확대’ 찬성」,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 2025.11.3일자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기지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어린이놀이기지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놀이기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4) 강남구청 보도자료, 「강남구, 전동킵보드·자전거 주차공간 233곳 운영...서울 평균 11배 ‘최다」, 2025. 08. 21일자

5) 신문기사, 「세종 학원가 등에선 전동킵보드 지정주차」, 동아일보, 2025.7.29일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법」이 있음.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⁶⁾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약칭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도 적용받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 개인형 이동장치⁷⁾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⁸⁾하고 있음.

6)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함.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함.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전동보드)의 안전확인 및 신고에 대해 규정⁹⁾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중 하나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규정¹¹⁾하고 있음.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2호에서 전동보드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실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되,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대여가 금지되어 있음.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보행·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또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2025년 11월 기준 총 186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¹²⁾.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수와 관련 산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은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 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이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업체의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규정 신설 등 대여사업 관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9.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으로 검색(검색일 2025.11.4.)

이러한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지역마다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관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을 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해 표준이 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¹³⁾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주차허용구역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규제방식에 대한 업계의 반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한편, 해외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도로교통 관련 일반법 또는 별도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한속도를 규정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997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323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8219호)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함.

운행 목적으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대여사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해외사례 >

구분	일본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별도 법령	없음 (도로교통법 적용)	「Active Mobility Act」	전기적 이동수단의 교통참여에 관한 규칙(eKFV)	없음 (도로교통법 적용)	「Guidance: Powered Transporters」
제한속도	30km/h	보도에서는 10km/h, 도로에서는 25km/h (전동킥보드는 보도 통행금지)	20km/h	25km/h	25km/h
보도통행 가능여부	불가	제한적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운전면허 / 제한연령	필요 / 16세 이상	불요 / 16세 이상	불요 / 14세 이상	불요 / 14세 이상	필요/ 18세 이상
헬멧 착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없음	재량
보험가입	의무	규정 없음	의무	공유업체에서 보험 제공	공유업체에서 보험 제공
대여사업 등록제 시행여부	부	여	부	부	시범사업 도입
이동장치 등록 의무	의무	의무	없음	없음	없음
기타 규제	-	번호판 부착	-	-	-

자료 : 국토교통부

2. 제정안의 내용

황운하의원안(2212392)과 김은혜의원안(2212495)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분되고, 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에 대하여 각각 총 6개의 장(章)과 35개의 조(條), 총 6개의 장과 37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복기왕·권영진의원안(2213026)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 두 가지 내용으로 크게 구분되고, 구체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 총 6개의 장(章)과 38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22대 국회에 이미 발의된 홍기원의원안(2201010), 박성민의원안(2201222), 정준호의원안(2210310)과의 조문체계를 비교해 보면, 제정안들은 홍기원의원안·박성민의원안·정준호의원안과 유사한 조문체계와 내용을 가지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음.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문체계 >

황운하 의원안(2212392)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은혜 의원안(2212495)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복기왕·권영진 의원안(2213026)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	목적	1	목적	1	목적
2	정의	2	정의	2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대여사업 관리·감독)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6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6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6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 신고 등 (지자체장 사용신고+식별번호 부착)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7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8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지원)	9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미지원)	8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국가 지원)
				9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
9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0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0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11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11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국가 지원)
				12	보험 및 피해구제
				13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11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12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14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황운하 의원안(2212392)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은혜 의원안(2212495)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복기왕·권영진 의원안(2213026)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15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1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1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국가 미지원)	1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국가 미지원)	17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국토부 지원)
		16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17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18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16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18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19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17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19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20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18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20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2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19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2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2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20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2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2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2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2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2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2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2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2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약관
2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6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27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취소 등
24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등록요건 유지)	26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보험 삭제)		
25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27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28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26	명의대여의 금지	28	명의대여의 금지	29	명의대여의 금지
27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29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30	대여사업자의 의무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28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30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3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황운하 의원안(2212392)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은혜 의원안(2212495)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복기왕·권영진 의원안(2213026) *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	자료제출 요구(국토부장관)	31	자료제출 요구	32	자료제출 요구
30	등록취소 등	32	등록취소 등 (제16조 책임보험)	33	등록취소 등
31	청문	33	청문	34	청문
32	과징금	34	과징금	35	과징금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33	벌칙	35	벌칙	36	벌칙
34	양벌규정	36	양벌규정	37	양벌규정
35	과태료	37	과태료	38	과태료
부 칙		부 칙		부 칙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3. 주요 항목별 검토

가. 제1장 총칙

1) 목적(안 제1조)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와 교통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황운하의원안과 김은혜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복기왕의원·권영진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통해 보행자와 교통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활성화 관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이용자의 안전을 동시에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정의(안 제2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과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시설, 보관 및 정비시설 등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고 대여하거나,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구과밀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인구 밀도, 유동 인구, 교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통 혼잡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교통취약지역”이란 제4호에 따른 인구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대중교통 운행 횟수, 배차 간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정안 모두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도로교통법」¹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지칭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면서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정의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1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

제정안(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21대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제정안들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①전동킥보드와 ②전동이륜평행차만을 위원회 대안에서 규율하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¹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음.

제정안들은 제21대국회의 위원회 대안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15)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규율하고 있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할 예정임.

범위를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임¹⁶⁾.

< 개인형 이동수단별 적용법규 체계 >

현행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현행 자전거법	
그 밖의 유사제품*  외륜보드  이륜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스로틀 전기자전거 (동력만으로 움직임 가능 THORTTLE(스로틀) 방식)	파스 전기자전거 (페달+전동기 동시동력 PAS(파스) 방식)
				
↓	↓	↓	자전거법 규율 예정	현행 자전거법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정안 의결시 「PM법」에 따른 PM		※ 외견, 이용자 인식, 속도 및 중량 등 유사점이 많아 같은 법에서 규율 예정	

* 바퀴·손잡이 형태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 등으로 분류되나, 속달에 시간이 걸리고, 보행자의 위험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동보드는 PM에서 배제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기술발전과 기존 교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정안들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외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하지만 제정안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16)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대하여 정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2201248)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는데,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용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성 있는 용어 정비가 필요해 보임.

또한 제정안들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간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복기왕·권영진의원안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과밀지역”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통취약지역”을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과밀지역 정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17)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만 해당¹⁸⁾되는데, 인구과밀지역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 등의 대도시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16개 시를 지정 중에 있음(참고3 참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편의 제고는 대중교통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통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과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과밀지역과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들의 목적인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과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과의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은 제정법의 우선 적용을 통해 특별법적 규율을 추구하는 반면,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기존 법률 체계를 존중하면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특성, 기존 법률체계와의 관계, 규율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정안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제2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안 제5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이하 “활성화및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및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보 및 보행자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 이용 활성화 및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 방안 3. 인구과밀지역에서의 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대책 4.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시행계획 4. 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시행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5.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방안 6. 데이터 수집·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 및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및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및관리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및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및관리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들에서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수행,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 교육 수행 등이 모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계획 수립 관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한 입법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¹⁹⁾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에 제정안들이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계획 수립 주체로 규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업무의 실질적 수행 주체와 계획 수립 주체를 일치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도시·군계획 등의 반영(안 제6조)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제6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제정안들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도시·군계획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확충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계획들의 시행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²⁰⁾에서는 자전거의 이용 및 이용시설 확충계획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계획의 목록을 도시·군계획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

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황운하의원안 및 복기왕·권영진 의원안 제7조, 김은혜의원안 제8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허용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중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허용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2.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중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④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하여 개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허용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거치시설, 충전시설 및 안전표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구역에 대하여도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 등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황운하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차허용구역에 안전표지, 주차시설 또는 충전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은혜의원안은 황운하의원안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조례 제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상위 기준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제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주차허용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를 금지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을 우선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도로에 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별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관련 비교 >

구분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현행 도로교통법
차도	-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 도로교통법 우선 적용 원칙 -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 주·정차 허용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가능
보도	-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 도로교통법 우선 적용 원칙 - 조례로 주차 허용 가능(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경우 주·정차 가능

구분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현행 도로교통법
			-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 협의 필수	
도로 외 장소	- 조례로 주차 및 주차금지 규정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차 및 주차금지 규정 가능	- 조례로 주차 및 주차금지 규정 가능	「도로교통법」 규정 대상 아님

가) 검토 의견

「도로교통법」 제32조²¹⁾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횡단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3조²²⁾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이나

2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2)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

다리 위,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로교통법」 제34조의2²³⁾는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등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들에 따라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음.

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3)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 ②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제정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허용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별도의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주차할 수 있는 지정구역제도가 마련되는 것인 동시에 원칙적으로 정해진 주차장소 이외에는 주차가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라는 법률안의 취지에 비추어 이용자 불편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지자체의 재량권에 따라 주차구역 조성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황운하의원안 제7조제2항 및 김은혜의원안 제8조제2항은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황운하의원안·김은혜의원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동 조항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역시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 조항을 제정안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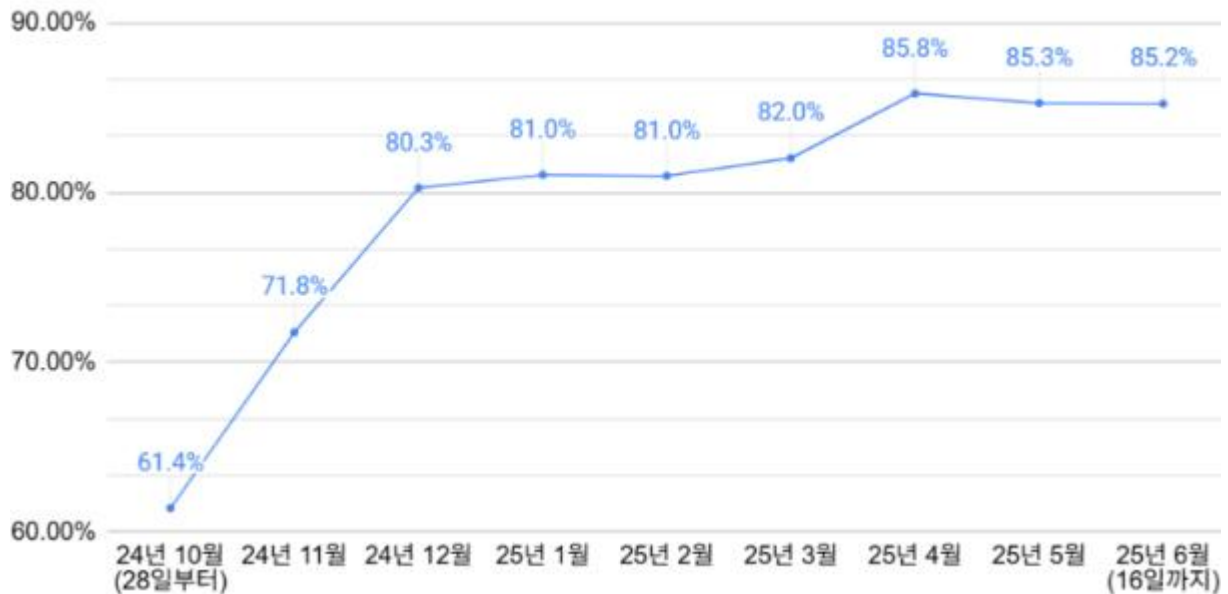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공유형PM 운영사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가상주차구역을 설정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방식 마련 시 참고할 수 있어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가 공유형PM 운영사별 주차구역요청을 검토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가상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가상주차구역 외 지역(주차금지구역) 주차시 앱에서 주차금지구역임을 안내하고 만약 이용자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는다면 강제반납²⁴⁾시 이용자에게 이용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10월 시행 이후 평균 주차 준수율은 80.6%를 유지하고 있어 가상주차구역 제도의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4)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강제로 이동수단을 주차하는 경우를 말함.

< '24.10월~'25.6월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 월별 준수율 >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로, 2020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여 ‘전동 킥보드 웨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그 결과 토론자들은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참고5 참조).

결론적으로, 제정안들의 주차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과의 정합성,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의 효과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제정안들은 기본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부처 간 합의를 거쳐 법사위까지 상정된 법안과 유사하므로 주차 규정에 대해 동의함.

다만, 제정안의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충분한 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함

(2) 한국PM 산업협회

PM은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서비스의 근간임에도, 법률안은 PM 전용 거치시설 외 PM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PM을 불법주차로 규제하게 됨.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해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점용료 납부 또한 확보해야 할 주차시설의 수를 고려하면 사업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됨.

또한, 유사한 서비스인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업의 경우 자전거활성화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본 법안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주차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4) 사용 신고(김은혜의원안 제7조)

김은혜의원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 신고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식별번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은 제1항에 따른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신고절차, 식별번호의 지정 및 표지의 부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김은혜의원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 신고를 할 경우 소유권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도난 발생 시 회수가 용이해질 수 있는 반면, 신고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비용의 이용자 부담과 신고 접수·처리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청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신고는 사용신고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25km/h 미만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기존의 법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신고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²⁵⁾에서는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²⁶⁾는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5)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황운하의
원안 및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8조, 김은혜의원안 제9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제9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제8조(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과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²⁷⁾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는 대중교통시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황운하의원안과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김은혜의원안은 비용 지원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음.

국가가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2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대 또는 주차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²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6)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9조), 보험 및 피해구제(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2조),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3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9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및 이 법에서 정한 교통안전 규정 준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며 필요한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4. 개인형 이동수단에 2인 이상 동승 금지 5.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 금지 6. 지정된 구역 외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금지 7. 그 밖에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금지 ② 누구든지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무면허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2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유지 및 정기점검
2. 이용자의 연령·면허 확인, 미성년자·무면허자 대여 금지
3.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신속한 수거
4.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수칙 안내
5.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마련
6. 책임보험 가입
7. 이용자 안전교육
8. 관할 지자체에 운행기록 등 자료 제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및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험 및 피해구제)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피해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2.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3.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률 지원 체계 구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제고,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 보급을 위하여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친환경 배터리, 충전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 연구
3. 자율주행, IoT, GP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개발
4. 보행자 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 장치 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성과의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험·실증사업 지원, 데이터 개방 및 공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및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9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그 이용자와 대여사업자 대한 의무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용자 의무는 대부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의무 규정들을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도로교통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대여사업자 의무는 제정안 제30조에서도 대여사업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두 조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보험 및 피해구제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2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면서 피해구제기금의 설치, 공공보험 및 보상제도 등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제정안 제18조제3항의 대여사업자 등록 요건, 제30조제2항 대여사업자의 의무 규정과 중복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구제기금 및 공공보험 구축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3조는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해 보이고, 이 제정안의 목적에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기술 혁신의 촉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 제고 및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전기준, 지속가능한 에너지, 스마트 기술 및 첨단장치 등에 대한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7)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황운하의원안 제9조, 김은혜의원안 및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0조)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9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금 감면, 안전시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취약지역에 대해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취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취약지역 외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8)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황운하의원안 제 10조, 김은혜의원안 및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1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및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및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과 수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충전시설과 수리센터의 안전기준, 설치·운영 방법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황운하의원안 및 김은혜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등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의 경우 제정안들과 유사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²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제3장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등

1)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황운하의원안 제11조, 김은혜의원안 제12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4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³⁰⁾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0)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³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제정안들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착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황운하의원안 제12조, 김은혜의원안 제13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5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2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저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장소의 통행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³²⁾도 도로 등에 자

3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황운하의원안 제13조, 김은혜 의원안 제14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6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①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조와 성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구조와 성능이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만이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이동수단 자체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황운하의원안 제14조, 김은혜의원안 제15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7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①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초·중·고등학교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 교육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는 막대한 예산 및 인력 소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함.

라. 제4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1)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등(황운하의원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김은혜의원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등록시 안전요건,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 하며, 대여사업 운영시 필요한 대여사업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 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 등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것 2.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것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어야 한다. 다만, 인구과밀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이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확보할 것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④ 대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다.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20조(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여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다른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u>허가</u>를 받아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사업을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여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대여사업자는 가맹계약, 위탁계약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용자 등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등록은 무효로 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은 이용자 보호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승인하거나 접수한 경우, 필요 시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조건을 요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대여사업자인 법인이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수한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한 자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위탁의 절차, 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또는 존속·신설되는 법인은 종전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절차, 처리기한 및 제2항 단서의 적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상속) ① 대여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여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상속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해당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제24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21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은 상속인에 대한 등록으로 본다.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①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가) 검토의견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별 업체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이 규율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및 불공정행위 금지,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고 수리에 관한 유사입법례³³⁾에서는 ‘그 기간이 끝난

33) 「항공안전법」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

날’에 대하여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이후에도 신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리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들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제가 필요함.

등록 요건에 안전 요건 확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피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음.

인구과밀지역의 경우 인구 및 교통 등이 혼잡한 지역이 수도권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구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지자체 사정에 맞는 운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장관이 인구과밀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취약지역의 경우 교통 편의 제고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제정안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특정 구역에서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교통취약지역의 별도 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결격사유 규정은 대여사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필요함.

명의이용 금지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여사업의 불법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관리위탁 시 시·도지사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 게만 위탁토록 하는 것은 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 시 신고 의무와 함께 사업자 지위 승계, 결격 사유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음.

대여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 신고 의무 및 지위 승계 규정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부적격자의 사업 운영을 방지할 수 있음.

휴업·폐업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대여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함.

(2) 공정거래위원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안에는 공감하나, 등록제 도입 시 과도한 요건을 규정하게 되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부령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때 과도한 시장진입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한국PM 산업협회

PM 대여사업자는 법률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개선명령을 통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가 가능함.

타 법의 경우 등록요건은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에 요건을 위임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법률안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서울 및 수도권에서 PM 전용 거치시설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동 지역의 운영을 제한함.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황운하의원안 제22조,
김은혜의원안 제24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5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24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표준대여약관을 제정 또는	제2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약관)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계약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약관의 작성·신고·고지 및 변경 권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대여약관(황운하의원안·김은혜의원안)을 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별로 대여약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별로 대여약관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여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³⁴⁾조에서는 자동차대

3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여사업자에게 사업 시작 전 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³⁵⁾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³⁶⁾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신고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황운하의원안 제23조,
김은혜의원안 제25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6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 향상 및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약관의 변경 3.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부적절한 운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들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계는 개선명령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³⁷⁾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해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은 대여사업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2) 한국PM 산업협회

제정안들은 이용자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개선명령의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지자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인정됨.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계획서 변경 명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운영 대수 및 속도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음.

4)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황운하의원안 제24조, 김은혜의원안 제26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0조)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제24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	제26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임차인이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	제30조(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제28조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주차금지구역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4.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 5.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교통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할 것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제16조(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등) ①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할 것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 주체, 종류, 보상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중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것 4.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할 것 5. 개인형 이동수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할 것 ③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시설 등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구과밀지역의 대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검토 의견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³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무면허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사업과 동일하게 운전자격 확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운전자격과 관련하여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³⁹⁾가 필요하고, 만 16세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 아니 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34조의3 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이상인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⁴⁰⁾할 수 있음⁴¹⁾.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규정하여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은 최고속도 25km/h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로서 무면허 운전 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업계는 현행 면허 체계에서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행 시 이용자 감소를 우려하며, 면허 확인 의무화에 앞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면허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40)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41)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제43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면서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자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1호로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요구하게 되었음.

이에 개인용 이동수단의 특성, 교통안전 확보의 필요성,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전면허 제도의 유지·보완 또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맞는 별도의 운전자격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자에게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한편, 김은혜의원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 저하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보험료 수준과 보험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들은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자동차⁴²⁾에 해당되지 않아 번호판 부착의무가 없는데, 이륜자동차(시속 25km 이상)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식별표지(번호판) 부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용이하고, 법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난 및 불법 사용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식별표지(번호판) 발급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에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별표지 부착은 부착에 따른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인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사용 신고 등 개인의 신고·등록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 25km/h 미만 이륜차 등에 대해서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기존의 법 체계를 고려할 때 개인의 사용 신고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42) 「자동차관리법」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2) 인천광역시

근래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전기자전거의 불법주차, 개조 등으로 민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식별번호를 지정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 됨.

(3) 한국PM 산업협회 의견

도로교통법상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오토바이 또는 차와 PM의 주행방법 및 이용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음.

유사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도 최고 25km/h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용을 위해 면허를 보유해야 할 의무는 없음.

PM 전용 온라인 면허 도입 시까지 PM 대여사업자에게 면허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유예가 필요함.

5)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황운하의원안 제25조, 김은혜의원안 제27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8조)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제25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	제27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	제28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할 때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운전자격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대여사업자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6) 명의대여의 금지(황운하의원안 제26조, 김은혜의원안 제28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9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9조(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정안들은 누구든지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대여를 알선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음.

명의대여 금지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임차 시 무면허, 미성년자 운전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⁴³⁾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7)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황운하의원안 제27조, 김은혜의원안 제29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27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설치) ①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소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대여사업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시설 등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인구밀집지역의 대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대여사업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정안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충전소 등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 활용의 인프라가 증가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대여사업이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한편, 복기왕·권영진의원안은 인구과밀지역의 대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인구과밀지역에서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경우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도시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대여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제5장 보칙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및 자료제출 요구 (황운하의원안 제28조, 김은혜의원안 제30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1조)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제28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충전소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2. 대여사업자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및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0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및 충전소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2. 대여사업자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현황 및 대여사업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1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와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충전시설 등 이용시설 현황 2. 대여사업자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등 현황 3.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에 관한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	복기왕·권영진의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료제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제출 요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대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제출 요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현황,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현황,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가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⁴⁴⁾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전거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등록취소 등 및 청문(황운하의원안 제30조, 김은혜의원안 제32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3조)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
제30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44)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
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7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	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4. 대여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0조를 위반하여 대여사업자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6. 제21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리위탁하거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휴업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
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8.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12.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 경영을 한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8.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 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4조를 위반하여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13.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 경영을 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문) 시·도지사는 제	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5조를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경우 1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3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 14.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경우, 제19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청문)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2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정안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대여사업자가 제정안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 등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⁴⁵⁾의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있음.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8.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터미널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3) 과징금(황운하의원안 제32조, 김은혜의원안 제34조,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5조)

황운하의원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4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정안들은 사업정지 처분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

도지사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금전적 제재로서, 자동차 운수사업, 철도사업 등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일정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방식의 과징금임.

동 과징금 부과를 통해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정안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여사업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⁴⁶⁾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6장 벌칙

- 1)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황운하의원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김은혜의원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제정안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등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들은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 등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제정안들은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김은혜의원안은 여기에 추가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 등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19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3. 제20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정지 처분 기간 중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4.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 2. 제22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3조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한 대여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대여사업자가 대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자가 밝혀진 경우 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같은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대여업자가 그 개인형 이동수단만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의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⁴⁷⁾, 제92조 및 제94조⁴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제24조⁴⁹⁾ 및 제25조⁵⁰⁾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다만, 김은혜의원안의 경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등 유사 입법례⁵¹⁾에 비해 과도한 걸로 보이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 제37조제6항은 「자동차관리법」⁵²⁾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4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8. 제16조(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4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1)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52) 제160조(과태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

아. 제7장 부칙

황운하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복기왕·권영진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제정안들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및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및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정안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주지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제도 및 대여사업의 관리위탁 허가(신고 또는 승인)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기존 사업자에게 등록 없이도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1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영현황(25년7월기준)

□ (현황) 주요 5개의 업체가 199,550대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운영중

업 체 명		스윙&디어	지쿠	빔	쌍쌍&킥 고잉	알파카
총 합		199,550				
	소 계	45,316	66,264	43,250	33,390	11,330
서울시	15,970	-	2,970	2,700	10,300	-
부산시	10,313	2,655	1,518	140	6,000	-
인천시	8,799	981	4,428	3,000	390	-
대구시	12,502	1,670	3,722	6,600	300	210
대전시	6,991	1,429	4,712	850	-	-
광주시	6,438	-	3,938	2,500	-	-
울산시	7,215	2,295	370	-	3,500	1,050
경기도	70,556	22,215	19,001	17,200	7,440	4,700
강원도	3,520	959	2,261	-	300	-
충청북도	11,026	2,014	2,512	3,850	1,400	1,250
충청남도	10,042	1,354	4,838	2,400	950	500
전라북도	9,189	2,269	4,810	840	1,270	-
전라남도	3,547	438	2,139	700	-	270
경상북도	9,489	3,922	3,237	890	40	1,400
경상남도	9,779	2,536	2,663	1,580	1,500	1,500
세종시	2,937	527	1,960	-	-	450
제주도	2,937	52	1,185	-	-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2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

□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것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행안부령)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 ③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형 전기자전거*)로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

* (비교 : 파스형 전기자전거)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전거법**에서 규율 중

- ¹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²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³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PM법**) 전기동력을 사용하고, 승차정원이 **1인**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속도와 중량을 갖춘 이동수단으로서

○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및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외견, 이용자 인식, 속도 및 중량 등이 파스형과 유사점이 많아 자전거법에서 함께 규율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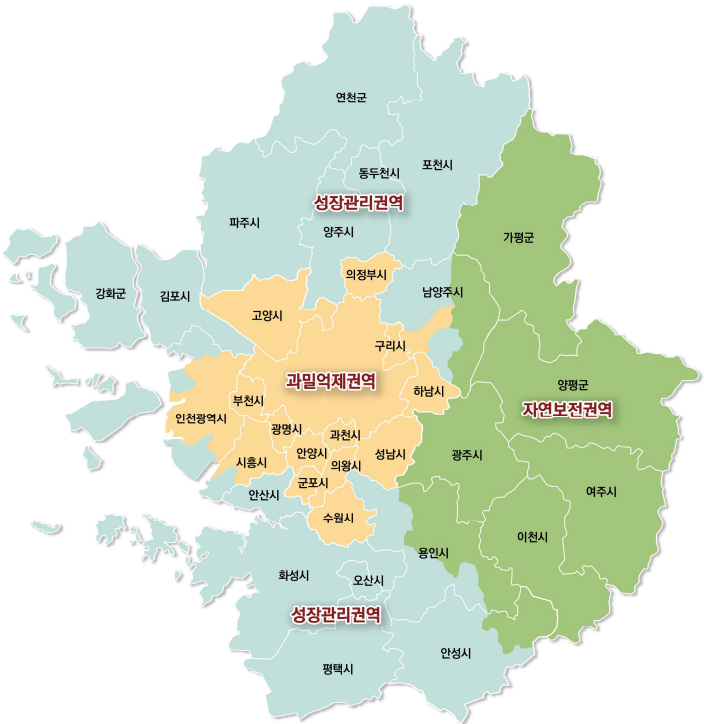
참고3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도권을 3개 권역의 범위로 구분

-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지정 목적	인구.산업 집중, 집중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 필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관리	한강 수계.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서울·인천·경기
면적('24)	2,017km ² (17.0%)	6,028km ² (50.7%)	3,830km ² (32.3%)	11,875km ²
인구('24)	18,740천명 (70.9%)	6,288천명 (24.1%)	1,290천명 (5.0%)	26,318천명

구분	권역도	
행정 구역	[과밀억제 (16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성장관리 (14시, 1군)] 인천광역시(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시흥시(일부)	
	[자연보전 (6시, 2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부)	

참고4 PM 번호판 해외 사례

구분	도입방식	도입대상	도입시기	사진
독일	스티커	모든 PM	2019년	
영국	스티커	대여 PM (시범사업*)	2020년	
일본	번호판 (등록)	모든 PM	2023년	
이탈리아	번호판 (등록)	모든 PM	2025년	
네덜란드	번호판 (등록)	모든 PM	2025년	
스페인	소유자등록제	모든 PM	2026년 (예정)	

참고5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해커톤 합의사항, 4차산업위, '20.10.) >

주·정차 가이드라인

□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 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②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③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④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⑤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⑥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⑦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⑧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⑩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⑪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⑫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⑬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



참고6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행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33. (생략)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③ (생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생 략)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 5. 13. 시행예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1. 5. 13. 시행예정).

②·③ (생 략)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③ (생 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 5. 13. 시행예정).

②~④ (생 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10. (생 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2. (생 략)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2021. 5. 13. 시행예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

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4. (생략)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8. (생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10. (생략)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 (생략)

8.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 (생략)

②·③ (생략)